

이창한 / 5월 / 기초GS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1360	18	14	32	1	0.47%	213
562527	19.5	12	31.5	2	0.94%	
561278	19.5	11	30.5	3	1.41%	
561897	17	13.5	30.5	3	1.41%	
563057	18	12.5	30.5	3	1.41%	
562284	19.5	10.5	30	6	2.82%	
561137	21	8.5	29.5	7	3.29%	
561907	22	7.5	29.5	7	3.29%	
563508	18	11.5	29.5	7	3.29%	
561894	14.5	14.5	29	10	4.69%	
563331	17	12	29	10	4.69%	
561307	19.5	9	28.5	12	5.63%	
561373	17.5	11	28.5	12	5.63%	
561918	21	7.5	28.5	12	5.63%	
556383	18.5	9.5	28	15	7.04%	
562184	19	9	28	15	7.04%	
556232	16.5	11	27.5	17	7.98%	
562648	17	10	27	18	8.45%	
563314	16	11	27	18	8.45%	
563440	15.5	11.5	27	18	8.45%	
556282	15.5	11	26.5	21	9.86%	
561253	16.5	10	26.5	21	9.86%	
561283	18	8.5	26.5	21	9.86%	
561298	16	10.5	26.5	21	9.86%	
561886	17.5	9	26.5	21	9.86%	
563571	16	10.5	26.5	21	9.86%	
561105	17	9	26	27	12.68%	
561276	18	8	26	27	12.68%	
561891	17	9	26	27	12.68%	
561941	18.5	7.5	26	27	12.68%	
561947	18.5	7.5	26	27	12.68%	
562262	17	9	26	27	12.68%	
562759	19.5	6.5	26	27	12.68%	
559375	16	9.5	25.5	34	15.96%	
561293	18.5	7	25.5	34	15.96%	
561320	17	8.5	25.5	34	15.96%	
561911	15	10.5	25.5	34	15.96%	
561937	16.5	9	25.5	34	15.96%	
563185	17	8.5	25.5	34	15.96%	
556203	15.5	9.5	25	40	18.78%	
556312	16.5	8.5	25	40	18.78%	
556409	18	7	25	40	18.78%	

561120	15	10	25	40	18.78%
561290	18.5	6.5	25	40	18.78%
561419	18.5	6.5	25	40	18.78%
561914	18	7	25	40	18.78%
561173	16.5	8.5	25	40	18.78%
562623	18.5	6.5	25	40	18.78%
561288	17	7.5	24.5	49	23.00%
561895	17	7.5	24.5	49	23.00%
561898	19.5	5	24.5	49	23.00%
561900	15	9.5	24.5	49	23.00%
561934	17.5	7	24.5	49	23.00%
561938	17.5	7	24.5	49	23.00%
562590	15.5	9	24.5	49	23.00%
563268	17.5	7	24.5	49	23.00%
562211	16	8.5	24.5	49	23.00%
562288	13.5	11	24.5	49	23.00%
563420	17	7.5	24.5	49	23.00%
556298	14	10	24	60	28.17%
556399	17	7	24	60	28.17%
561132	17.5	6.5	24	60	28.17%
561214	18.5	5.5	24	60	28.17%
561234	17	7	24	60	28.17%
561896	14	10	24	60	28.17%
561950	19.5	4.5	24	60	28.17%
562164	15	9	24	60	28.17%
556448	15	9	24	60	28.17%
562889	18	6	24	60	28.17%
563494	16.5	7.5	24	60	28.17%
556358	16.5	7	23.5	71	33.33%
561118	17.5	6	23.5	71	33.33%
561148	18	5.5	23.5	71	33.33%
561259	17.5	6	23.5	71	33.33%
561930	14.5	9	23.5	71	33.33%
563064	14.5	9	23.5	71	33.33%
556337	13.5	10	23.5	71	33.33%
562390	13.5	10	23.5	71	33.33%
556214	16	7	23	79	37.09%
556412	16.5	6.5	23	79	37.09%
561939	17.5	5.5	23	79	37.09%
561943	17.5	5.5	23	79	37.09%
556213	14	8.5	22.5	83	38.97%
561258	15	7.5	22.5	83	38.97%
561289	15	7.5	22.5	83	38.97%
562993	14.5	8	22.5	83	38.97%
563058	13.5	9	22.5	83	38.97%

556434	15.5	6.5	22	88	41.31%
556479	19	3	22	88	41.31%
559826	15	7	22	88	41.31%
561217	17.5	4.5	22	88	41.31%
561229	14	8	22	88	41.31%
561270	15	7	22	88	41.31%
561431	17	5	22	88	41.31%
561919	15	7	22	88	41.31%
561931	15	7	22	88	41.31%
562263	16	6	22	88	41.31%
563299	16	6	22	88	41.31%
561094	15.5	6	21.5	99	46.48%
561169	16	5.5	21.5	99	46.48%
561365	16	5.5	21.5	99	46.48%
561402	17.5	4	21.5	99	46.48%
562854	16	5.5	21.5	99	46.48%
562975	17.5	4	21.5	99	46.48%
562207	14.5	7	21.5	99	46.48%
563300	17	4.5	21.5	99	46.48%
563558	16.5	5	21.5	99	46.48%
561154	15	6	21	108	50.70%
561165	12	9	21	108	50.70%
561264	15	6	21	108	50.70%
561902	13	8	21	108	50.70%
561904	14.5	6.5	21	108	50.70%
561936	18.5	2.5	21	108	50.70%
561942	18	3	21	108	50.70%
561944	17	4	21	108	50.70%
562009	13.5	7.5	21	108	50.70%
563462	16.5	4.5	21	108	50.70%
556408	15	5.5	20.5	118	55.40%
561129	16.5	4	20.5	118	55.40%
561238	15	5.5	20.5	118	55.40%
561256	14	6.5	20.5	118	55.40%
561271	15.5	5	20.5	118	55.40%
561287	17	3.5	20.5	118	55.40%
561899	14	6.5	20.5	118	55.40%
561903	14	6.5	20.5	118	55.40%
563165	15.5	5	20.5	118	55.40%
563401	12	8.5	20.5	118	55.40%
563486	15	5.5	20.5	118	55.40%
556205	16	4	20	129	60.56%
556360	15	5	20	129	60.56%
561149	13.5	6.5	20	129	60.56%
561906	20	0	20	129	60.56%

561929	14.5	5.5	20	129	60.56%
562217	13	7	20	129	60.56%
563311	16.5	3.5	20	129	60.56%
561171	15.5	4	19.5	136	63.85%
561235	14	5.5	19.5	136	63.85%
561908	13.5	6	19.5	136	63.85%
561915	13	6.5	19.5	136	63.85%
561955	14.5	5	19.5	136	63.85%
562006	16	3.5	19.5	136	63.85%
562289	12	7.5	19.5	136	63.85%
562692	13	6.5	19.5	136	63.85%
556305	15	4	19	144	67.61%
556344	11	8	19	144	67.61%
561163	13.5	5.5	19	144	67.61%
561170	14	5	19	144	67.61%
561905	17	2	19	144	67.61%
562192	19	0	19	144	67.61%
556416	13.5	5.5	19	144	67.61%
562233	19	0	19	144	67.61%
563181	19	0	19	144	67.61%
561098	16	2.5	18.5	153	71.83%
561317	13.5	5	18.5	153	71.83%
561349	18.5	0	18.5	153	71.83%
563382	16	2.5	18.5	153	71.83%
563426	12	6.5	18.5	153	71.83%
559611	14.5	3.5	18	158	74.18%
561893	12.5	5.5	18	158	74.18%
561913	13	5	18	158	74.18%
561933	13.5	4.5	18	158	74.18%
562161	16.5	1.5	18	158	74.18%
563532	12.5	5.5	18	158	74.18%
556219	11	6.5	17.5	164	77.00%
556376	14	3.5	17.5	164	77.00%
556382	14.5	3	17.5	164	77.00%
556499	14.5	3	17.5	164	77.00%
561910	13.5	4	17.5	164	77.00%
556236	15	2	17	169	79.34%
556483	13	4	17	169	79.34%
561121	15	2	17	169	79.34%
561218	11.5	5.5	17	169	79.34%
561885	10.5	6.5	17	169	79.34%
561887	11	6	17	169	79.34%
561960	17	0	17	169	79.34%
563605	13	4	17	169	79.34%
562449	15.5	1.5	17	169	79.34%

562783	12	5	17	169	79.34%
556373	16.5	0	16.5	179	84.04%
561302	11	5.5	16.5	179	84.04%
562503	16.5	0	16.5	179	84.04%
562852	12.5	4	16.5	179	84.04%
556377	12	4	16	183	85.92%
561103	13.5	2.5	16	183	85.92%
561281	16	0	16	183	85.92%
563482	14.5	1.5	16	183	85.92%
556397	12	3.5	15.5	187	87.79%
557152	13.5	2	15.5	187	87.79%
561113	15	0.5	15.5	187	87.79%
561284	15.5	0	15.5	187	87.79%
561294	11.5	4	15.5	187	87.79%
563727	10	5.5	15.5	187	87.79%
556311	15	0	15	193	90.61%
561097	12.5	2.5	15	193	90.61%
561949	14	1	15	193	90.61%
563358	15	0	15	193	90.61%
556272	11.5	3	14.5	197	92.49%
561285	12.5	2	14.5	197	92.49%
111111	10.5	3.5	14	199	93.43%
562540	14	0	14	199	93.43%
561134	11	2	13	201	94.37%
561203	13	0	13	201	94.37%
563179	9.5	3.5	13	201	94.37%
556443	10.5	2.5	13	201	94.37%
562191	7.5	5	12.5	205	96.24%
556301	12	0	12	206	96.71%
556411	12	0	12	206	96.71%
556430	10.5	0	10.5	208	97.65%
563074	7	1.5	8.5	209	98.12%
222222	5.5	2	7.5	210	98.59%
562816	7.5	0	7.5	210	98.59%
561889	7	0	7	212	99.53%
562251	6	0	6	213	100.00%

[문제 - 1]

I. 설명하시오.

1. 논쟁점의

0.5 채무자가 일부 남았음을 이유로 일부인용판결을 한 것이 처분권 주의원칙에 반한지. 2중대판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판은 채무부종계행원칙의 법익의 이익이 있다고 문제된다.

2. 처분권주의의 의미

0.5 절차의 개시, 승판의 대상, 절차의 종료는 당사자의 결정이 달려져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게 못한다. (제 203조)

3. 처분권주의 내용

1.5 일부인용판결도 처분권주의에 반한게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주장하여 등본제정인 말소건을 처분하는 경우 잔존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선이행판결로 하여 말소건과 채무가 평행성이 있게 볼 수 있다.

4. 선이행판결 거부

나) 피고의 선이행항변이 이유 있을 것

이러한 처분은 항변이나 항변을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거나 변제권의 완성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1 변제의 경우 2은 남은 채무가 1명이라고 선이행항변하고 있다.

(2) 원인의 반대의 발생이 없을 것.

판례는 원인이 피상행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재정원등기 약속을 지한 경우 관공 채무가 발생하면 관공 채무 발생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하여 관공 채무 발생이 전제된 이상 관공 채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사본의 경우. 무인 채무가 관공 채무 발생과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적용한다.

(가) 비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신의성실의 원칙도 강행규범이므로 비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재정원등기 약속을 지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등기가 관공 채무를 지거나 채무의 양상이 관공 채무의 양이 변제를 하는 등기와 달리 정당한 지체 발생을 기를 해이하게 관공 채무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본의 경우 채권과 같이 채무의 양상이 관공 채무의 양을 관공 채무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4. 채무부족채권처분 이익의 이익 구분

(1) 문제점

이익의 2의 경우 원인으로 정당한 ~~부채~~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이들을 미지급 시에 이익의 2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때 이익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판례

5

원인이 피상한 채무 변제를 이유로 채무부존재임인 채무인
권자명인등기상호채무를 변경하여 2계116인 경우 권자명
등기상호를 주채무인이 채무인인 명의 관련 법안을 제정
한데 가장 우선적사항은 520이므로 채무부존재임인 채무인 명
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 방법.

0.5

피상한채무 관련 신청의 법률상근거는 법인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부채의 존재 여부를 유추
할수있도록 하는것이요 하다. 다만 채무기판결을 하는
하다.

6. 신청(가) 1)

1

법원은 「원칙」 조항에 「채무인인 변경하는 피상
2 상호로 권자명인등을 변경하여 인의 명의 하
는 가능한다 / 채무부존재임인 채무인 명의 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판

0.5

결을 하셔야 합니다.

10/15

II. 신청(2)

1. 신청(1)

피자가 주장하며 주장이 승리를 위한 경우 방법이
이이 주장하기 문제이다.

2. 당해과 주장의 취지 방법이 주장하기 어려움

4) 방법.



당사자가 특허청이 등록 불합격 이유라고 하는
결정을 인정하고 판결 주문이 영향을 미친 판결
이유에 관하여 불합격하게 하기 때문에 불합
격이 되고 있음으로 이를 인정 판결을 하는 등이다.

(2) 예외

1.5 그러나 상계행위의 경우 상계가 인정되는 범
위에서 기관장이 불합격하여 상계행위를 가한 채
결이 확정된 후부터 불합격하게 하므로 때문에
후대까지의 권리 행위를 인정 판결한 등 상계
행위 예외가 있으므로 후회 판결해야 한다.

3. 불합격(2)

0.5 법원은 피의 행위에 중 후대까지의 불합격
결을 인정 판결해야 한다. 2건의 불합격판
결에도 있음으로 상계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불
합격 판결을 부정한다. 3/5

III 불합격

1. 불합격

1.1 당사자가 간접행위로 주채권과 달리 계약
이 성립하게 하였으므로 간접행위 인정하게 된다.

2. 주채권과 간접행위의 의미와 구분

나 의미

0.5 주해위원 변질요건을 발생시키는 내해방상 3차인 하경
 사상을 통해 간접사영도 주해위원 주민제하로 이어
 지는 사실이다.

(2) 개별 분야.

0.5 간접사영도 주해위원 권리 행사가 주권에게 있으나
 권력 인정할 수 있으며 재정이 안되어. 판관에게 있
 고 판관들의 귀범이 있다.

3. 취득재판위원 장래사영도 주해위원의 여부

(1) 판관.

0.5 취득재판위원이 장래사영도 변질요건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즉 주해위원이라 간접사영도 변질요건
 원 권력의 주권은 주권으로 인해 판관에게 있어
 장래사영도를 인정할 수 있다.

(2) 학생.

① 라투르.

라투르 기관장도 민방 제 1662000시 규정해 있는 반
 든 민방 제 2432000시 취득재판위원 기관장도
 하게 하기 재판이 간접사영도 해당한다.

② 판관.

제가 취득재판위원 장래사영도를 인정할 것이며
 법원이 이를 판관에게 제 3차로 보낼 것이며
 201 주해위원 보기도 한다.



(2) 방법.

0.5

기상정보 주체자로 보면 취득권 기상정보 양으로 볼
후 제 3자 위법취득권으로 볼 때는 정보 보호
후 취득권이 인정되면 주체자 지위를 해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보고 방법이 중개
이해 가능한 기상정보 제공을 판정해야 한다.

4. 결론(3)

취득권 기상정보 간접적으로 제공이 되면 제
3자가 기상정보 양으로 볼 때는 정보 보호
방법으로 이어 취득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기상정보 제공 주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
은 기상정보 양으로 볼 때는 취득권이 인정된
판정이 다른 기상정보 인정 방법의 판정도
정당하다.

5/10

(끝)



(1) 의미.

0.5 |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상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두
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2) 효과.

| 제1항을 포함한 전체 범위의 제2항이므로 항의 범위가
어디까지도 위법사항이 없게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항)
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독립적으로 제1항과 병합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다.

(3) 정도

| 제1항을 먼저 제2항으로 볼 경우 한정조건을 부여하는
요소로 제1항의 존재를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이 그 정도에서 독립적으로 볼 것이다.

(4) ~~항과 항의 독립성 여부.~~

~~같은 범위를 가진 항은 독립적이지 않다.~~

| 항은 각각의 다른 범위로 각각 다른 항과
독립적인 항으로 각각 독립적인 항으로 존재한다.

(5) 서로 다른 항

0.5 | 서로 다른 항은 독립적인 항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항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4. 서로 다른 (1)

항은 각각의 다른 범위로 각각 다른 항과
독립적인 항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0.5 행정처분처벌로 법원의 판결로 부정하다.

7/10

II. 설문(2).

1. 능동성지.

주장하기 옳은 사안이 아닌 자국의 사정권 행사하기

0.5 능하다. 행정처분 처분이 아닌 주장만으로 구제기 안다
판계된다.

2. 변질의 원인과 주장내용. 사용

당사자 사안이 아닌 주장으로 주장 주장권행사 하지

0.5 변질은 이를 기각 판결 하도록 한다. 당사자가 주장
하러 안도 사안 주장권행사 변질은 인정는 5 있다.

3. 주 권익사안이 주장사안인 여부

변질판결이 인정된 주장사안인 경우에는 변질판결

0.5 부재가능 개판 인정판이다. 변질판 인정판으로
판결은 변질판결 원판판이므로 주장사안.

4. 주장권 지체된 원다.

변질 주장권 인정판 주장권 인정판 인정판 인정판

1 | 으로 주장권나 주장권 인정판 인정판 인정판 인정판
주장권 인정 판 5 있다.

5. 주장책임.

0.5 | 당사자이기 유권한 사안인 주장권 인정 판에 대해
어 반기 판 불이판이다. 행정처분 처분 원판판이다



반면 유언서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채권이 있다.

6. 사한채 청구.

0.5 | 무효채권 양인이 간행채권 주장하는 것임이 인정
| 으면 부수 있다.

7. 자부채 청구 회복.

(1) 양보.

1 | 제1항의 주장하는 무효채권 인정되면 양보의
| 인정성이 인정된 제1항의 항변은 부수. 부수채권
| 인정되면 양보가 부수채권으로 인정된다.

(2) 전자기 - 제1항의 주장.

① 양보.

1 | 강제가 주장하는 양보 유언서로 전자기 청구는 부
| 주채 인정에 시비하는 무효채권 인정됨.

② 양보.

1 | 무효채권 인정되면 양보채권이 인정되는 것임
| 이 인정되면 무효채권을 인정하면 무효채권 인정됨
| 이 있다.

(3) 양보.

0.5 | 제1항의 양보. 양보채권 인정되면 부수 인정됨
| 제1항의 양보채권 인정되면 인정됨.

(4) 사한채 청구.

무효채권 인정되면 양보채권 인정됨



0.5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2. 본 발명의 실시예(2)

0.5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7/10

